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알림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9. 10.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알림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4건(내역은 불임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19. 09. 10. ~ 09. 24.(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우리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